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0
----------	-----

제출년월일 : 2021.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조문 정비 등 자치 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등 위임범위 일탈 조문 개정

- 1)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항 삭제 (안 제5조제2항제4호)
- 2)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 (안 제31조제3항)
- 3) 대부료 등의 납기 수정 (안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위임조문 개정

- 1) 위임 법령 명시 (안 제1조)
- 2) 읍·면장 처분권한 삭제 (안 제3조제1항)
- 3)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주민 공개 의무 신설(안 제7조제2항)
- 4) 대부료·사용료 감경 대상 및 감경률 확대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 5) 대부료·사용료 조정 범위 확대 (안 제34조제1항)
- 6) 3급 관사 중 공중보건의 숙소 운영비 지원 근거마련 (안 제56조제2항)
- 7) 준용 규정 삭제 (안 제67조)

- 다. 운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 수의매각 기준 정비 (안 제40조)
- 1)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수의매각 문구정비 (안 제40조제2호)
  - 2)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 매각 기준 정비 (안 제40조제4호)
  - 3) 종교용도 수의매각 기준 신설 (안 제40조제9호)
  - 4) 사도에 편입된 균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신설 (안 제40조제10호)

라.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1) 조직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정 (안 제4조)
- 2) 용어 및 띄어쓰기 (안 제8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8조, 안 제22조제2항)
- 3)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20조제2항, 안 제22조제4항, 안 제32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4. 30. ~ 2021. 5.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5767(2021.4.27.)]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5767(2021.4.27.)]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요청[가족복지과-17441(2021.4.22.)]  
개선요청 반영[재무과-12849(2021.4.26.)]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를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재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3.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부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2조제2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를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로, “합하여”를 “합산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출산식”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호와 같다”를 “호의 산출산식에 따른다.”로 한다.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대부하는”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

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전부 감액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대부료를”을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분”을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④ (생략)
-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  
-----  
--.

1. (현행과 같음)
2. ----- 행정지원국장-----  
-----  
-----  
호선한다.

3.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  
-----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

1. ~ 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  
-----  
-----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⑪ (생략)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이나 용도폐지

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 행  
정지원국장-----.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재산관리팀장-----

-----.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략)

<신 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  
----- 공유 재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  
-----  
----- 재산관리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 및 처분) -----  
----- 행정재산-----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

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

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⑤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영 제17조제6항, 영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우 -----  
-----  
-----  
-----  
----- 합산하여 -----  
-----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호의 산출산식에 따른다.

1.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

1.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 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  
----- 전부 감액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  
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② -----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를 분-----.

<삭 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삭 제>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나.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삭 제>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5. ~ 8. (생략)

<신설>

<신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

<신설>

제67조(준용) 국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5. ~ 8. (현행과 같음)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현행 제67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 관계법령 발췌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 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 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관사 운영비 부담 (안 제56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임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재무과장 이용구
연락처	(033) 330 - 2270